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 안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인 기업 29분07초 시간연장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질문과 답변 고객센터

고용24 채용지원 직업 능력 개발 기업지원금 확인 및 신고 전체메뉴

전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추천검색어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국민내일배움카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직업훈련

나의 서비스 신청 현황

작성중	0건	제출	2건	처리중	0건
보완	0건	반려	0건	처리완료	1건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자주찾는 서비스

이직확인서 신고 구인신청관리 사업주근로자선택 사업주훈련 사업주계약 등록 (청년도약) 참여사업관리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려요.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 기업

채용 교육/훈련 출산/육아 유연 근무

기업로그인 > 마이페이지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신청관리

고용24 채용지원 직업 능력 개발 기업지원금 확인 및 신고 검색 전체메뉴

홈 > 마이페이지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참여신청관리

마이페이지(기업)

마이페이지(기업)

회원정보

맞춤정보

민원신청 현황

서비스이력

구인관리

참여사업관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관리

채용지원금관리

지원금관리

사업만족도

회원정보수정

기업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소

참여신청 현황

프로그램 정보	운영기관	주요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5명)		
사업연도 2022	처리상태 승인	협약제결 상태 협약제결
신청일	승인일자	협약제결일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6명)		
사업연도 2023	처리상태 반려	협약제결 상태
신청일	승인일자	협약제결일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6명)		
사업연도 2023	처리상태 승인	협약제결 상태 협약제결
신청일	승인일자	협약제결일자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업예신청 2025년 사업참여신청

2025 사업참여

담당 운영기관 선택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담당운영기관 ●

담당운영기관을 입력해 주세요.

운영기관 검색

대표 사업장 현황

하이테크 강남지사

사업연도	2025 * 사업연도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이후 수정 불가능합니다.	기업유형 ●	☐ 개인 ☐ 법인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이정석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관리번호 검색
주소			
피보험자 합계 ●	명	설립일	

클릭

대표 사업장 등록 시 주의사항



관련 사업장 현황

“제조업”으로
조회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형2) 참여 가능

추가 +

삭제 -

사업장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관리번호 검색
피보험자 합계	명	설립일	
주소			

관련 사업장 추가는 선택사항

지사가 본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번호 또한 나누어져 있다면

- 1) 본사에서 모두 관리를 희망하신다면, 본사에서 지사를 [관련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본사와 지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하신다면, 각각 따로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명(단체명) :

대표자 :

개업연월일 : 2002년 11월 02일

법인등록번호 :

본점소재지 :

사업종류 : 임대

발급사유 : 신규

기준 피보험자수,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장 합산)

명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지원한도

명

* 기준 피보험자 수(수도권 50%, 비수도권 10%)로 조회

수도권 기업여부

☒ 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체크

매출액심사제외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

제외 경우)

매출액 합계 작성

사업개시일

매출액

원

매출액 시작일

YYYY-MM-DD

매출액 종료일

YYYY-MM-DD

날짜 동일하게

발급번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경영사업자 포함)		
89-9-801-1887-671				
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1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태		종	목	
업 장				
과 세 기 간		매출과세표준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24/01/01	2024/06/30			
2024/07/01	2024/12/31			
		미 하	어 백	

기준 피보험자수,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장 합산)		명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지원한도		명	수도권 기업여부	☐ 수도권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조회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부 확인)

기업구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 2선지원대상기업1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2 ☐ 3년창업기업 ☐ 고용위기지역 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3 ☐ 미래유망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 지역주력산업
--------------------------	--	--	---

지원대상 기업 기준

채용계획

※ 작성한 인원보다 적게 채용하셔도 불이익이 없으나, 더 많이 채용하시기 위해서는 관련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님의 수고로움을 줄이고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대치로 부탁드립니다.

지원 한도와 동일하게

채용예정인원	명	근로계약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 30 시간	월급여	2,096,270 원
*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채용자 정보

- *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 * 해당 채용자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 삭제 -

성명		채용일	
성명을 입력해 주세요.		YYYY-MM-DD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일반전화	선택 '-'를 제외하고 입력	담당자 팩스	선택 '-'를 제외하고 입력
담당자 이메일	@	기타(직접입력)	

첨부파일

- 파일용량은 10MB 이하이며, 5개 파일 업로드 가능합니다.
- 등록 가능 파일 : gif, jpg, jpeg, bmp, png, ppt, pptx, doc, docx, hwp, xls, xlsx, pdf, txt, zip, egg

1. 청년 5인 명) 사업자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첨부

첨부파일 등록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오세요.

사업주 확인서 (사업 참여 신청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모두 아니요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111④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지식서비스산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 예 ☐ 아니요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요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요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요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요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요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요
⑧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요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요

지원제외의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22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확인
③ 취업예로청년 유형 ①~⑩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확인
⑨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재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 확인
⑩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확인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확인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 청년디딤돌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나,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금(장려금, 보조금 등 명칭 불문)의 반환을 당국에서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등 사업의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요
--	---

예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자격 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자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정보 입력

사업주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사업주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선택)

사업주 일반전화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 제1조(목적)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래빗홀 주식회사(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청년이 2년 연속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부정청구 처리지침(‘23년 별도 배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등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

체크

※ 사업참여 신청서에 대해 **적격(승인)** 처리된 경우, 본 협약서를작성한 것으로 본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목록

임시저장

신청

신청 완료